

울산광역시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규정

제정 2004.11.16.

개정 2019.04.03.

개정 2020.02.03.

제1조(목적)

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 대상)

- ①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
 1. 중증이상의 질환으로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가.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,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
단, 상피내암, 경계선 종양, 갑상선암은 제외 한다.
- ② 기타 이사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제3조(운영기금)

매년 경상회계 이월금의 5%를 적립한 금액과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.

제4조(지급 기준 및 지원금액)

- ① 회원 등록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.

회비 납부 횟수	지급액
5회 미만	100,000원
5회 이상 15회 미만	200,000원
15회 이상 & 평생회원	300,000원

- ②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한다.

제5조(제출서류)

1. 회원위로금 신청서(본회 소정 양식) 1부
2. 해당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
3. 통장사본 1부

제6조(지급절차)

- ① 회원위로금 신청서와 진단서를 소속기관 간호부서에 제출한다.
- ② 소속기관의 간호부서장은 지원사유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울산광역시간호사회에 제출하고 현직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바로 울산광역시간호사회로 제출한다.
- ③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.
- ④ 지급 후 소속기관 간호부서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.